34. 키프로스(Cyprus)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57년
○ 현행법 : 1995년(사회연금), 2010년(사회보험)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

3. 적용대상

○ 사회보험제도
- 당연적용 : 근로자와 자영자
- 임의적용 : 이전 가입이력이 있는 자, 키프로스 사용자를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키프로스 국민

○ 사회부조제도
- 당연적용 : 키프로스 거주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사회보험 : 소득의 7.8%
  - 임의 가입 키프로스 근로자는 신고소득의 13%, 해외근로 임의 가입자는 소득의 15.6%
  - 납부액 산정에 적용되는 주간 소득 하한, 상한은 €174.38,€1,046
  - 보험료는 질병, 분만, 산업재해 및 실업급여의 현금급여의 재원이 됨
- 사회부조 : 없음

○ 자영자
- 사회보험 : 소득의 14.6%
  - 납부액 산정에 적용되는 주간 소득 하한은 €261.57 ~ €775.99 (업종에 따라 상이), 상한은 €1,046
  - 보험료는 질병, 분만급여의 현금급여의 재원이 됨
- 사회부조 : 없음

○ 사용자

• 사회보험 : 임금지급총액의 7.8%

- 납부액 산정에 적용되는 주간 소득 하한, 상한은 €174.38, €1,046
- 보험료는 질병, 분만, 산업재해 및 실업급여의 현금급여의 재원이 됨

• 사회부조 : 없음

○ 정 부

• 사회보험

- 가입자, 자영자, 해외근로 임의가입자에 대한 임금지급총액의 4.6% (키프로스 근로자의 경우 4.1%)
- 납부액 산정에 적용되는 주간 소득 하한, 상한은 €174.38, €1,046
- 보험료는 질병, 분만, 산업재해 및 실업급여의 현금급여의 재원이 됨

• 사회부조 : 사회보험의 총비용을 정부수입으로 충당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노령연금(사회보험)

- 65세(광부는 63세) 도달자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소득에 대해주간 기준소득의 780배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납부 또는 인정된 가입기간이 기본기간의 30% 이상인 자
- 기준기간 : 1964년(1957년을 기준으로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 1957년) 또는 가입자가 16세 도달한 때 이후 (둘 중 나중인 쪽, 정년까지)
- 주간기본소득 : € 174.38
- 조기연금 : 납부 또는 인정된 가입기간이 기본기간의 70% 이상인 63세 도달자;
  (3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있는 58세 이상의 광부는 그 직업에서 퇴직할 경우, 광부 근로 5개월 당 1개월씩 조기 수급 가능)
  · 기준기간 : 1964년(1957년을 기준으로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 1957년) 또는 가입자가 16세 도달한 때 이후 (둘 중 나중인 쪽, 정년까지)
- 피부양자 보조금 :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여성 배우자, 장애가 있으며 연금을 받지 않는 남성 배우자, 15세 이하의 자녀(미혼녀 학생의 경우 23세 이하, 미혼남 학생 혹은 군인의 경우 25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피부양 부모, 혹은 가입자보다 어린 피부양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지급

- 연금의 국외지급 가능

• 노령일시금(사회보험)
- 68세 도달자로 노령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주 가입소득의 312배 이상의 소득에 대해 6년 이상 납부하였어야 함
- 연금의 국외지급 가능

• 사회연금(사회부조, 소득조사) : 40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20년 이상 또는 18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35년 이상인 65세 키프로스 거주자

○ 장애연금

• 장애연금(사회보험)
- 근로능력 완전상실자에게 지급됨
- 최소 3년 이상 가입기간이 있고 주 가입소득의 156배 이상의 신고소득에 대해 납부했으며, 납부 또는 인정된 가입기간이 기본기간의 25% 이상이어야 함
- 장애가 발생하기 전년도에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인정된 경우, 또는 지난 2년간 평균 가입소득이 주 가입소득의 20배 이상이어야 함.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 질병급여의 수급요건과 동일
- 기준기간 : 1964년(1957년을 기준으로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 1957년) 또는 가입자가 16세 도달한 때 이후 (둘 중 나중인 쪽, 정년까지)
- 주간기본소득 : € 174.38
- 국외지급 가능
- 부분장애 : 근로능력상실이 50%이상 100% 미만인 경우 지급
  · 최소 3년 이상 가입기간이 있고 주 가입소득의 156배 이상의 신고소득에 대해 납부했으며, 납부 또는 인정된 가입기간이 기준기간의 25% 이상이어야 함
  · 장애가 발생하기 전년도에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인정된 경우, 또는 지난 2년간 평균 가입소득이 주 가입소득의 20배 이상이어야 함.
- 피부양자 보조금 :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여성 배우자, 장애가 있으며 연금을 받지 않는 남성 배우자, 15세 이하의 자녀(미혼녀 학생의 경우 23세 이하, 미혼남 학생 혹은 군인의 경우 25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피부양 부모, 혹은 가입자보다 어린 피부양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지급

○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경우, 또는 최소 3년

이상 가입기간이 있고 주 가입소득의 156배 이상의 신고소득에 대해 납부했으며, 납부 또는 인정된 가입기간이 기준기간의 25% 이상인 경우 피부양 배우자에게 지급됨

- 기준기간 : 1964년(1957년을 기준으로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 1957년) 또는 가입자가 16세 도달한 때 이후 (둘 중 나중인 쪽, 정년까지)
- 주간기본소득 : € 174.38
- 국외지급 가능
-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현금 질병급여의 수급 요건과 동일
- 피부양자 보조금 :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여성 배우자, 장애가 있으며 연금을 받지 않는 남성 배우자, 15세 이하의 자녀(미혼녀 학생의 경우 23세 이하, 미혼남 학생 혹은 군인의 경우 25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피부양 부모, 혹은 가입자보다 어린 피부양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지급

• 고아연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당시 가입자이었고 자녀(완전 학생인 경우 남자 25세, 여자 23세이거나 사망 당시 군복무중인 경우, 장애인은 제한없음)를 양육했을 경우; 완전고아의 경우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가입자이었던 경우
- 종료일시금 : 고아가 더 이상 고아연금 수급연령이 아닐 때 지급
- 고아연금은 국외 지급 가능

• 배우자 일시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배우자 연금 납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주간 기본가입소득의 156배 이상의 소득에 대해 납부했을 경우 장애가 있는 피부양 배우자에게 지급됨
-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 조건은 노령일시금과 같음
- 사회연금과 동시에 수령 불가능
- 주간 기본가입소득 : € 174.38

• 실종자 수당(사회보험) : 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피부양자에게 지급; 해외지급 가능

• 장제비(사회보험)

- 사망자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고아연금, 혹은 실종자 수당을 받고 있었거나, 평균 주간기본소득의 26배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26주 이상 납부했으며 전년도에도 주간기본소득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납부했을 경우 지급 가능
-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때도 지급
- 주간기본소득 : € 174.38
- 해외지급 가능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노령연금(사회보험)

-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으로 구성됨
- 완전 기초연금은 가입자의 연 평균기본소득의 60%로 52를 나눈 금액
- 보충연금 : 주간 기본가입소득을 초과하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1.5%
- 연 기본가입소득 : € 9067.38
- 주간 기본가입소득 : € 174.38
- 기본가입소득은 임금 변화에 따라 연 1회 조정; 보충연금 관련 소득은 매년 조정됨
- 연금액 산정을 위한 주당 소득상한 : € 1,046
- 최저연금액 : 완전기본연금액의 85%
- 피부양자 보조금 : 피부양자가 한 명일 경우 연 평균 기본가입소득의 80%, 두 명일 경우 90%, 세 명일 경우 100%;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의 경우 자녀 한 명당 기본연금 10%씩 최대 20% 증액.
- 지급횟수 : 연간 13회 (4주당 1회)

• 노령일시금(사회보험) : 총 납부하거나 인정된 납부금액의 15%가 일시금으로 지급됨

• 사회연금(사회부조)

- 월 € 338.99 지급; 사회연금보다 더 적은 다른 연금 또는 유사 연금을 수급한다면 두 연금의 차액 지급
- 소득조사 : 다른 연금 및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 그만큼 감액
- 연금액 조정 : 지급중인 연금액은 매년 임금, 물가 변동에 따라 1월과 7월 조정

○ 장애연금

• 장애연금(사회보험)

-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으로 구성됨
- 완전 기초연금은 가입자의 연 평균기본소득의 60%로 52를 나눈 금액
- 보충연금 : 주간 기본가입소득을 초과하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1.5%
- 연 기본가입소득 : € 9067.38
- 주간 기본가입소득 : € 174.38
- 장애발생시점부터 63세까지의 기간 인정
- 기본가입소득은 임금 변화에 따라 연 1회 조정; 보충연금 관련 소득은 매년 조정됨

- 연금액 산정을 위한 주당 소득상한 : € 1,046

• 부분장애

- 근로능력상실정도가 76~99%인 경우 완전연금의 85%; 66.7~75%인 경우, 완전연금의 75%; 50~66.6%인 경우 완전연금의 60%가 지급됨
- 피부양자 보조금 : 피부양자가 한 명일 경우 연 평균 기본가입소득의 80%, 두 명일 경우 90%, 세 명일 경우 100%;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의 경우 자녀 한 명당 기본연금 10%씩 최대 20% 증액.
- 지급횟수 : 연간 13회 (4주당 1회)
- 연금액 조정 : 지급중인 연금액은 매년 임금, 물가 변동에 따라 1월과 7월 조정

○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사회보험)

-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으로 구성됨
- 완전 기초연금은 가입자의 연 평균기본소득의 60%로 52를 나눈 금액
- 보충연금 :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노령/장애 보충연금(주간 기본가입소득을 초과하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1.5%)의 60%
- 연 기본가입소득 : € 9067.38
- 주간 기본가입소득 : € 174.38
- 기본가입소득은 임금 변화에 따라 연 1회 조정;
- 연금액 산정을 위한 주당 소득상한 : € 1,046
- 피부양자 보조금 : 피부양자가 한 명일 경우 연 평균 기본가입소득의 80%, 두 명일 경우 90%, 세 명일 경우 100%;
- 재혼일시금 : 유족 배우자가 재혼 시, 연금 지급은 중단되며 연금액 1년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배우자연금 및 노령 또는 장애연금(보충연금 포함)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가입소득에 따라 상한까지 수급 가능(상한액 상이)
- 지급횟수 : 연간 13회 (4주당 1회)

• 고아연금(사회보험)

- 고아 1인당 사망자 기본가입소득의 20% 지급 (3인까지);
- 완전고아 1인당 사망자 기본가입소득의 40%에 배우자 보충연금의 50%(2명 이상인 경우 100%) 추가 지급
- 종료 일시금 : 일정 연령 도달시, 고아 연금액 1년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연 기본가입소득 : € 9067.38
- 주간 기본가입소득 : € 174.38

- 기본가입소득은 임금 변화에 따라 연 1회 조정;
- 연금액 산정을 위한 주당 소득상한 : € 1,046
- 지급횟수 : 연간 13회 (4주당 1회)

• 배우자일시금(사회보험)
- 사망자 기본가입소득의 15%에 기본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의 9%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주간 기본가입소득 : € 174.38
- 연금액 산정을 위한 주당 소득상한 : € 1,046

• 실종자 수당(사회보험)
- 가입자의 연 평균기본소득의 60%로 52를 나눈 금액에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노령/장애 보충연금(주간 기본가입소득을 초과하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1.5%)의 60%를 가산하여 지급
- 연 보험료 부과대상 기본소득 : € 9067.38
- 주간기본소득 : € 174.38
- 기본소득은 임금 변화에 따라 연 1회 조정
- 연금액 산정을 위한 주당 소득상한 : € 1,046
- 실종자 수당 및 노령 또는 장애연금(기초, 보충연금 포함)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가입소득에 따라 상한까지 수급 가능(상한액 상이)

• 장제비(사회보험)
- 가입자나 연금수급자의 사망 시 € 507.81, 피부양자 사망 시 € 253.91 지급
- 연금액 조정 : 지급중인 연금액은 매년 임금, 물가 변동에 따라 1월과 7월 조정

7. 관리운영기관

○ 노・사・정 3자 자문 사회보험위원회(tripartite advisory Social Insurance Board)
• 제도 관리 및 감독

○ 노동·사회보험부(Ministry of Labor, Welfare and Social Insurance)
• http://www.mlsi.gov.cy
• 사회보험국(Social Insurance Service)을 통한 제도 운영

<2018년 ISSA 자료>